

“소비자는 소득공제 40%, 판매자는 수수료 0%” 정답은 제로페이!

I·SEOUL·U
너와 나의 서울

서울특별시

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전용차로(버스, 자전거)위반 과태료 징수결의('19년 03월)

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1조 제3호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·징수 하고자 합니다.

가. 결의내역

- 1) 위반일시 : '17. 02. 22 ~ '19.01.31(19. 1월)
- 2) 부과 건수: 2,353건(승용차 2,305건, 승합차 46건, 이륜차 2건)
- 3) 부과금액 : 118,015,000원
(승용차 115,175,000원, 승합차 2,760,000원, 이륜차 80,000)
- 4) 납부기간 : '19. 03. 11~'19. 04. 30

나. 예산과목 : 교통사업특별회계, 세외수입, 임시적세외수입, 기타수입, 과태료

붙임: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시분 ('19. 3월)내역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장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3/11 오종범

협조자

시행 교통지도과-5285 () 접수 ()
우 /
전화 2133-4569 /전송 2133-4904 / / 부분공개(6)